
“인천항 내항 1·8부두 재개발사업” 제3차 제안공모 질의·답변

2024. 5.



「인천항 내항 1·8부두 재개발사업」 제3자 제안공모 질의·답변

◇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-714호(2024.4.29.) “인천항 내항 1·8부두 재개발사업 제3자 제안공모 공고”에 관한 서면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.

번호	공모 지침서	질의 내용	답 변
1	제3조 사업 내용 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구역 및 토지이용구상에서 복합도심지구 내 주거기능 도입시 소음, 비산먼지, 빛 공해, 교통안전, 보안 문제 등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토지이용구상(안)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복합도심지구 내 주거기능 도입 관련 민원사항은 사업착수 전 인허가 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.
2	제5조 사업 일반 조건 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항운노조 조합원에 대한 생계지원금 규모 및 반영 방법은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필요시 「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(이하 ‘항만재개발법’)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33조, 동법 시행령 제34조 및 「항만재개발에 따른 생계지원금 업무처리규정」에 따라 검토할 사항입니다.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항운노조 소속 조합원 생계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시기는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필요시 「항만재개발법」 제34조에 따라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.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시행자의 기타 권리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여부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필요시 사업시행자가 「항만재개발법」 및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.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모지침서 제5조 ④항 1호에 따른 단계별 항만재개발 시행계획의 범위는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천항 내항 1·8부두만 해당합니다.
3	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3자 공모 이후, 변경되는 사업계획에 대해 주민 공청회 및 환경영향평가 이행 여부는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항만재개발법」에 따라 주민공청회는 사업계획(변경) 고시 전에, 환경영향평가는 실시계획 승인 전에 이행할 예정입니다.

□ 상기 내용은 공모지침서 제39조 질의 접수 및 회신과 관련하여 서면 질의한 내용을 기준으로 답변을 정리하여 게시한 것입니다.

□ 동 사항은 공모지침서 제39조 제2항에 따라 「인천항 내항 1·8부두 재개발사업 제3자 제안공모 지침서」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.